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1085호 2016. 3. 15(화)

◀ 고 시 ▶

- 도로명주소 고시(제2016-24호) 2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제2016-24호) 6

◀ 공 고 ▶

- 공인공고(제2016-363호) 8
- 2016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포항시 맑은물 사업소 제2016-60호) 12
- 도로지정 공고(포항시 남구청 제2016-64호) 14

회 람									
--------	--	--	--	--	--	--	--	--	--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6 - 2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3월 11일

포항시장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449번길 44-35 외 187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인정되므로 각종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6 - 24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3월 11일

포항시장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23번길 24 외 5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인정되므로 각종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NO	종린 지번주소	변경후 지번주소	종린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문해주소 변경일	변경시유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325-2, 325-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325-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23번길 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23번길 24	2016.02.23	관리지번변경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325-2, 325-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325-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23번길 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23번길 24-2	2016.02.23	건물군분리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황사리 76-1, 76-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황사리 76-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154번길 4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154번길 46	2016.03.08	관리지번 변경
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황사리 76-1, 76-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황사리 76-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154번길 4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154번길 44	2016.03.08	건물군 분리
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719-231, 719-2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719-2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151번길 15-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151번길 15-12	2016.03.09	관리지번 변경
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719-231, 719-2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719-2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151번길 15-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151번길 15-14	2016.03.09	건물군 분리

공 고

포항시공고 제2016 - 363호

공 인 공 고

포항시 공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등록) 및 폐기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15

포 항 시 장

- 1. 등록(재등록) 및 폐기 사유 : 인증기 구입 및 교체
-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및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16. 3. 16
- 3. 등록(재등록) 공인의 공인 이름 및 인영 : 붙임 1
- 4. 폐기 공인의 공인 이름 및 인영 : 붙임 2


□ 등록 공인의 공인 이름 및 인영(붙임1)

공인 이름	규격	인영	비고
제증명발급용 포항시남구해도동장인	한글 2.1Cm정방형		재등록
해도동민원발급용 포항시남구청장인	한글 2.1Cm정방형		등록
제증명발급용 포항시남구효곡동장인	한글 2.1Cm정방형		등록
효곡동민원발급용 포항시남구청장인	한글 2.1Cm정방형		재등록
제증명발급용 포항시북구청장인	한글 2.1Cm정방형		
제증명발급용 포항시북구중앙동장인	한글 2.1Cm정방형		재등록

공인 이름	규격	인영	비고
중앙동민원발급용 포항시북구청장인	한글 2.1Cm정방형		재등록
제증명발급용 포항시북구죽장면장인	한글 2.1Cm정방형		재등록
제증명발급용 포항시북구기북면장인	한글 2.1Cm정방형		재등록

□ 폐기 공인의 공인 이름 및 인영(붙임2)

공인 이름	규격	인영	비고
제증명발급용 포항시남구해도동장인	한글 2.1Cm정방형		인증기 교체
효곡동민원발급용 포항시남구청장인	한글 2.1Cm정방형		인증기 교체

공인 이름	규격	인영	비고
제증명발급용 포항시북구중앙동장인	한글 2.1Cm정방형		인증기 교체
중앙동민원발급용 포항시북구청장인	한글 2.1Cm정방형		인증기 교체
제증명발급용 죽장면장인	한글 2.1Cm정방형		인증기 교체
죽장면민원발급용 포항시북구청장인	한글 2.1Cm정방형		인증기 교체
제증명발급용 포항시북구기북면장인	한글 2.1Cm정방형		인증기 교체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16 - 60호

공 고

우리시 하수처리구역내에서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등) 및 포항시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m³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과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일

포 항 시 장

2016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1. 대상지역

- 가. 시가지 전역
- 나.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한 지역[홍해, 구룡포, 오천, 연일읍, 대송, 동해면, 증명,대보,죽장,공단산업단지(1단지~4단지),기계,청하]
- 다.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의 하수를 하수처리구역내로 유입 처리할 경우 포항시 하수도사용조례에서 정한 구역

2. 부과대상

하수도법시행령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m³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

3.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 환경부고시 제2015-133호 (2015. 7. 31.)와 같음

4. m³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 1,622,000원

※ 단 합류식처리구역은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감한다

5. 단독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붙임 1]

부 칙

①(시행일) 이 공고는 2016년 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전에 부담대상인 원인자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독정화조 규모별 설치 비용

(단위 : 천원)

용량		단독정화조	용량		단독정화조	용량		단독정화조	용량		단독정화조
m ²	인용	설치비용(B)	m ²	인용	설치비용(B)	m ²	인용	설치비용(B)	m ²	인용	설치비용(B)
1	5	791	51	255	13,363	101	505	25,386	151	755	37,953
2	10	929	52	260	13,542	102	510	25,637	152	760	38,205
3	15	1,104	53	265	13,721	103	515	25,889	153	765	38,456
4	20	1,420	54	270	13,900	104	520	26,140	154	770	38,707
5	25	1,658	55	275	14,080	105	525	26,391	155	775	38,959
6	30	1,948	56	280	14,259	106	530	26,643	156	780	39,210
7	35	2,288	57	285	14,438	107	535	26,894	157	785	39,462
8	40	2,629	58	290	14,617	108	540	27,145	158	790	39,713
9	45	2,775	59	295	14,797	109	545	27,397	159	795	39,964
10	50	2,921	60	300	14,976	110	550	27,648	160	800	40,216
11	55	3,281	61	305	15,292	111	555	27,900	161	805	40,467
12	60	3,640	62	310	15,607	112	560	28,151	162	810	40,718
13	65	4,000	63	315	15,923	113	565	28,402	163	815	40,970
14	70	4,360	64	320	16,239	114	570	28,654	164	820	41,221
15	75	4,719	65	325	16,555	115	575	28,905	165	825	41,472
16	80	5,079	66	330	16,871	116	580	29,156	166	830	41,724
17	85	5,439	67	335	17,187	117	585	29,408	167	835	41,975
18	90	5,798	68	340	17,502	118	590	29,659	168	840	42,226
19	95	6,158	69	345	17,818	119	595	29,910	169	845	42,478
20	100	6,518	70	350	18,134	120	600	30,162	170	850	42,729
21	105	6,723	71	355	18,463	121	605	30,413	171	855	42,980
22	110	6,928	72	360	18,792	122	610	30,664	172	860	43,232
23	115	7,133	73	365	19,121	123	615	30,916	173	865	43,483
24	120	7,337	74	370	19,450	124	620	31,167	174	870	43,734
25	125	7,542	75	375	19,779	125	625	31,418	175	875	43,986
26	130	7,911	76	380	20,108	126	630	31,670	176	880	44,237
27	135	8,280	77	385	20,437	127	635	31,921	177	885	44,488
28	140	8,649	78	390	20,766	128	640	32,172	178	890	44,740
29	145	9,018	79	395	21,095	129	645	32,424	179	895	44,991
30	150	9,387	80	400	21,424	130	650	32,675	180	900	45,242
31	155	9,547	81	405	21,525	131	655	32,926	181	905	45,494
32	160	9,708	82	410	21,627	132	660	33,178	182	910	45,745
33	165	9,868	83	415	21,729	133	665	33,429	183	915	45,997
34	170	10,029	84	420	21,830	134	670	33,681	184	920	46,248
35	175	10,190	85	425	21,932	135	675	33,932	185	925	46,499
36	180	10,477	86	430	22,033	136	680	34,183	186	930	46,751
37	185	10,764	87	435	22,135	137	685	34,435	187	935	47,002
38	190	11,052	88	440	22,237	138	690	34,686	188	940	47,253
39	195	11,339	89	445	22,338	139	695	34,937	189	945	47,505
40	200	11,626	90	450	22,440	140	700	35,189	190	950	47,756
41	205	11,793	91	455	22,709	141	705	35,440	191	955	48,007
42	210	11,961	92	460	22,979	142	710	35,691	192	960	48,259
43	215	12,128	93	465	23,248	143	715	35,943	193	965	48,510
44	220	12,295	94	470	23,518	144	720	36,194	194	970	48,761
45	225	12,462	95	475	23,787	145	725	36,445	195	975	49,013
46	230	12,607	96	480	24,057	146	730	36,697	196	980	49,264
47	235	12,751	97	485	24,326	147	735	36,948	197	985	49,515
48	240	12,895	98	490	24,596	148	740	37,199	198	990	49,767
49	245	13,039	99	495	24,865	149	745	37,451	199	995	50,018
50	250	13,183	100	500	25,135	150	750	37,702	200	1,000	50,269

◦ 단독정화조 1,000인 이상은 1,000인 규격의 인당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p>■ 인당 평균단가 = 50,269천원 ÷ 1,000인 = 50천원</p>

포항시 남구 공고 2016- 64호 공고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그 위치를 지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 도로의 지정
2. 도로의 위치지정내용

대지위치	도로지번	지정면적(㎡)	도로길이(m)	도로너비(m) (평균값)	지정일자	비고
포항시 남구 이동 589번지 외1필지	포항시 남구 이동 589번지	205.00	34m	6m	2016.03.08	
	포항시 남구 이동 590번지	22.00				

3. 도면 : 남구청 건축지적과 비치

2016.03.08

포항시 남구청장

문의처 : 건축허가과(054-270-6474)